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76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 강명구·배준영·성일종

박덕흠 • 이헌승 • 주호영

서명옥 · 박수민 · 조경태

김기웅 · 김성원 · 조배숙

임종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 상담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주기의 단축이 필 요함.

이에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세1항제5호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제38조의2제1항 중 "3년마다"를 "매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제38조(자립지원) ①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u>상담지원</u>
<u>5.</u> (생 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	
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	
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	
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	
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u>3년</u>	<u>메년</u>
<u>마다</u>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